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02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김위상 · 신성범 · 김은혜
박충권 · 박정훈 · 박성훈
김기웅 · 조지연 · 김성원
김승수 · 김재섭 · 김선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건에서 사망자가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서 발견된 점을 미루어보아, 책임자 점검의 범위가 작업환경을 넘어 실질적 상류 공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하여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안전·위생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안전·위생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5. ~ 9.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4의2.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 시설의 안전·위생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u></p> <p>5. ~ 9.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